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11. 3.21.
개정 2017. 3. 1.
개정 2020. 3. 1.
개정 2021. 9. 1.
개정 2022. 7. 1.
개정 2023.12. 1.
개정 2024. 3. 1.
개정 202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연구 또는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업방법의 개선 및 강의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
5. 학습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
6. 기타 교육과정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

제2장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3.1)

1. 위원장 : 1명
2. 위 원 : 15명 내외 (개정 2021.9.1.)

② 위원장은 교무혁신처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혁신처장, 교양학부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전공설계지원센터장, 교무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3.1., 2020.3.1., 2021.9.1., 2022.7.1., 2024.3.1., 2024.9.1.)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

제5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지원팀 직원이나 전공설계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 2020.3.1., 2023.12.1., 2024.9.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3.1)

1. 학과(전공) 교육과정 소위원회 (개정 2023.12.1.)
2. 학부 교육과정 소위원회 (신설 2023.12.1.)
3. 단과대학 교육과정 소위원회 (개정 2023.12.1.)
4. 교양학부 운영위원회 (개정 2023.12.1.)
5.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개정 2023.12.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의원은 학(부)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3.1)

③ 소위원회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7.3.1)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3.1)

제3장 회의 및 기타 의결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17.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3.1)

제9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